

|        |               |
|--------|---------------|
| 의안번호   | 2203719       |
| 의 퇴 인  | 서영석 의원        |
| 회 답 일  | 2024. 10. 22. |
| 추 계 번호 | 24B3581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산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1,524~1,876억원, 2030년 1,716~1,956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8,107억원~9,592억원(연평균 1,621억원~1,918억원) 이상으로 추계
  - 본 추계서는 난임휴가 사용자가 개정안에 규정된 난임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최대 지급기간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각 개인의 난임휴가 사용 일수가 시술 내용 및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37억원, 2030년 502억원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산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1,079~1,429억원, 2030년 1,206~1,444억원으로 추계
    - － 본 추계서에서의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예산안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함
  - 개정안에 따라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산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8~10억원, 2030년 9~10억원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배우자출산휴가(A)                                          | 437   | 456   | 473   | 490   | 502   | 2,358 | 472   |
| 난임치료휴가(시나리오1, B)                                    | 1,079 | 1,109 | 1,141 | 1,173 | 1,206 | 5,708 | 1,142 |
| 난임치료휴가(시나리오2, C)                                    | 1,429 | 1,433 | 1,436 | 1,440 | 1,444 | 7,182 | 1,436 |
| 기간제·파견근로자 난임치료휴가<br>급여 시나리오1( $D=B \times 0.72\%$ ) | 8     | 8     | 8     | 8     | 9     | 41    | 8     |
| 기간제·파견근로자 난임치료휴가<br>급여 시나리오2( $E=C \times 0.72\%$ ) | 10    | 10    | 10    | 10    | 10    | 52    | 10    |
| 추가재정소요1( $F=A+B+D$ )                                | 1,524 | 1,573 | 1,622 | 1,672 | 1,716 | 8,107 | 1,621 |
| 추가재정소요2( $G=A+C+E$ )                                | 1,876 | 1,899 | 1,920 | 1,941 | 1,956 | 9,592 | 1,918 |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75조(출산<br>전후휴가 급여<br>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제1항)<br>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을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 | 의무규정 |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                                  | 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의무규정 |
|    |                                  | <u>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u>                                                                                                                                                                                                                                                                                                       |      |
| 2  | 안 제76조(지급기간 등)                   |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br>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로 한정함                                                                                                                | 의무규정 |
| 3  | 안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제1항) | 의무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75조(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제1항)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첨부</li> <li>—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li> <li>— 개정조항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직 등에 대한 지원 조항으로, 이 중 난임치료휴직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li> </ul> |
| 2  |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 ○    | —                                                                                                                                                                                                                                                                        |
| 3  | 안 제76조의2(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8)의 의결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개정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지급기간도 연장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급기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가 확대되며,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기간도 확대됨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추가 지급기간
  - 다태아: 35일(현행 5일 → 개정안 40일)
  - 단태아: 25일(현행 5일 → 개정안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추가지급기간
  - 다태아: 20일(현행 0일 → 개정안 20일)
  - 단태아: 15일(현행 0일 → 개정안 15일)
- 최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29)이 가결되었으나, 본 추계서의 작성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5일)에 근거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 (사업대상자)

① 사업대상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는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현황을 토대로 산출

- 통계청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이므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장래 출생아 수에 적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2] 출생아 수 및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단위: 명)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출생아 수(A)        | 302,676 | 272,337 | 260,562 | 249,186 | 230,000 |
|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수(B) | 1,059   | 18,720  | 18,270  | 16,168  | 15,797  |
| 비율(C=B/A×100)   | 0.3%    | 6.9%    | 7.0%    | 6.5%    | 6.9%    |

주: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②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됨

- 개정안에 따른 사업대상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자 수”에 “출산휴가급여 지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2023년 출산휴가급여 지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59.5%이므로, 이를 2023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15,797명)에 적용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에 대응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근로자 수(10,772명)를 산출
  - 출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본 추계서는 성별 차이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산출된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수(10,772명)를 2023년 기준 통계청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적용하여 출생아 수 대비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4.7%)을 산출
  - 이후 산출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4.7%)을 장래 출생아 수에 적용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를 산출
  - 본 추계서는 2023년 기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4.7%)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3]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A, 천명)                                        | 229    | 239    | 248    | 257    | 263    |
| 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B=A \times 6.5\%$ , 명)        | 14,858 | 15,507 | 16,091 | 16,675 | 17,064 |
| ②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C=A \times 4.7\%$ , 명) | 10,725 | 11,193 | 11,615 | 12,036 | 12,317 |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다태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2023년 기준 다태아 출산률(5.5%)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4]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 14,858 | 15,507 | 16,091 | 16,675 | 17,064 |
| － 다태아                        | 817    | 853    | 885    | 917    | 939    |
| － 단태아                        | 14,041 | 14,654 | 15,206 | 15,758 | 16,126 |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 10,725 | 11,193 | 11,615 | 12,036 | 12,317 |
| － 다태아                        | 590    | 616    | 639    | 662    | 677    |
| － 단태아                        | 10,135 | 10,578 | 10,976 | 11,374 | 11,640 |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지급단가)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4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산출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sup>1)</sup>에 따른 상한액 규정<sup>2)</sup>에 따라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401,910원/5일)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1) 제76조(지급 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호

[표 5]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연혁

(단위: 원)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상한액 | 382,770 | 382,770 | 382,770 | 382,770 | 401,910 | 401,910 |

자료: 각 연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기간과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표 6]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        |        |        |
| 사업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 14,858 | 15,507 | 16,091 | 16,675 | 17,064 |
| 대상자 수         | - 다태아(A, 명)                                          | 817    | 853    | 885    | 917    | 939    |
|               | - 단태아(B, 명)                                          | 14,041 | 14,654 | 15,206 | 15,758 | 16,126 |
| 추가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C, 일)                                   | 35     | 35     | 35     | 35     | 35     |
|               |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D, 일)                                   | 25     | 25     | 25     | 25     | 25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  |                                                      |        |        |        |        |        |
| 사업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 10,725 | 11,193 | 11,615 | 12,036 | 12,317 |
| 대상자 수         | - 다태아(E, 명)                                          | 590    | 616    | 639    | 662    | 677    |
|               | - 단태아(F, 명)                                          | 10,135 | 10,578 | 10,976 | 11,374 | 11,640 |
| 추가 지급 기간      | 다태아(G, 일)                                            | 20     | 20     | 20     | 20     | 20     |
|               | 단태아(H, 일)                                            | 15     | 15     | 15     | 15     | 15     |
| 1일 지원단가(I, 원) |                                                      | 80,382 | 80,382 | 80,382 | 80,382 | 80,382 |
| 추가 재정 소요      | 우선지원대상기업(다태아)<br>( $J=A \times C \times I$ , 억원)     | 23     | 24     | 25     | 26     | 26     |
|               | 우선지원대상기업(단태아)<br>( $K=B \times D \times I$ , 억원)     | 282    | 294    | 306    | 317    | 324    |
|               | 소계( $L=J+K$ , 억원)                                    | 305    | 318    | 330    | 342    | 350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다태아)<br>( $M=E \times G \times I$ , 억원) | 9      | 10     | 10     | 11     | 11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단태아)<br>( $N=F \times H \times I$ , 억원) | 122    | 128    | 132    | 137    | 140    |
|               | 소계( $O=M+N$ , 억원)                                    | 132    | 137    | 143    | 148    | 151    |
|               | 합계( $P=L+O$ , 억원)                                    | 437    | 456    | 473    | 490    | 502    |

주: 1.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실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추계결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37억원, 2030년 502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추가재정소요 | 437  | 456  | 473  | 490  | 502  | 2,358 | 472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난임휴가 급여 지급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난임치료에 관한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추계하며, 시나리오 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하고,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예산안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산출함
- 본 추계의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 출산율,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행태 및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최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29)이 가결되었으나, 본 추계서의 작성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 예정이므로 현시점을 기준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1) (시나리오 1) 국가공무원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에 근거한 추가재정소요

-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한 추가재정소요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난임치료휴가가 유급휴가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치료 휴가 사용자 수가 확대될 수 있지만,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의 사용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함
    - 국가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과 고용보험가입자의 근로환경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구분하여 난임치료 시술 유형에 따라 휴가를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술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규정하고 있음<sup>3)</sup>
-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난임치료휴가자 수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적용하여 산출
  - (난임치료 휴가자 수) 본 추계서에서 난임치료휴가자 수는 고용보험가입자 수에 2023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3)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표 8] 고용보험가입자 수: 2019~2023년

(단위: 천명)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연평균<br>증가율 |
|----|-------|-------|-------|-------|-------|------------|
| 남성 | 7,874 | 7,962 | 8,158 | 8,318 | 8,481 | 1.87%      |
| 여성 | 5,990 | 6,150 | 6,392 | 6,580 | 6,718 | 2.91%      |

자료: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9] 고용보험가입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고용보험<br>가입자 수 | 남성 | 8,967 | 9,135 | 9,306 | 9,480 | 9,658 |
|               | 여성 | 7,322 | 7,536 | 7,755 | 7,981 | 8,213 |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제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자 수에 2023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10] 국가공무원 난임치료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일)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여성 | 현원(A)                   | 71,104  | 73,823  | 76,687  | 80,228  | 82,964  |
|    |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B)         | 227     | 248     | 330     | 331     | 400     |
|    | 현원 대비 사용자 수(C=B/A)      | 0.32%   | 0.34%   | 0.43%   | 0.41%   | 0.48%   |
|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D)         | 393     | 444     | 598     | 1,218   | 1,692   |
|    | 1인당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E=D/B) | 1.7     | 1.8     | 1.8     | 3.7     | 4.2     |
| 남성 | 현원(F)                   | 218,149 | 221,580 | 221,718 | 224,964 | 226,282 |
|    |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G)         | 200     | 245     | 305     | 449     | 514     |
|    | 현원 대비 사용자 수(H=G/F)      | 0.09%   | 0.11%   | 0.14%   | 0.20%   | 0.23%   |
|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I)         | 297     | 432     | 422     | 614     | 805     |
|    | 1인당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J=I/G) | 1.5     | 1.8     | 1.4     | 1.4     | 1.6     |

주: 군인·군무원, 교원 등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표 11]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 남성 | 20   | 21   | 21   | 22   | 22   |
|              | 여성 | 35   | 36   | 37   | 38   | 40   |
|              | 합계 | 56   | 57   | 59   | 60   | 62   |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수급자 수의 비중은 전체 출산휴가급여 지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을 준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 지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매년 최근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비율의 평균 증가폭(0.7%) 만큼 매년 증가한다는 가정을 통해 산출
  -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현황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남성의 고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12]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 56   | 57   | 59   | 60   | 62   |
| 우선지원대상기업     | 34   | 35   | 36   | 37   | 38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 | 22   | 22   | 22   | 23   | 23   |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2024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난임치료휴가의 지급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 15일에 한함
  - 개정안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8호)

제18조의34)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이며,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지급 기간은 최초 15일임

[표 13]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사업 대상자 수      | 우선지원대상기업(A, 천명)            | 34     | 35     | 36     | 37     | 38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B, 천명)        | 22     | 22     | 22     | 23     | 23     |
| 추가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C, 일)             | 30     | 30     | 30     | 30     | 30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D, 일)         | 15     | 15     | 15     | 15     | 15     |
| 1일 지원단가(E, 원) |                            | 80,382 | 80,382 | 80,382 | 80,382 | 80,382 |
| 추가 재정 소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F=A×C×E, 억원)     | 816    | 842    | 870    | 898    | 928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 (G=B×D×E, 억원) | 263    | 267    | 271    | 274    | 278    |
|               | 소계(H=F+G, 억원)              | 1,079  | 1,109  | 1,141  | 1,173  | 1,206  |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079억원, 2030년 1,206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4]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추가재정소요 | 1,079 | 1,109 | 1,141 | 1,173 | 1,206 |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3. 본 추계서는 난임치료휴가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규정된 최대 급여 지급기간에 대해 난임휴가급여를 지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기간이 개인별로 차등 적용될 경우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시나리오 2) 2025년 예산안 산출 자료에 근거한 추가재정소요

□ 시나리오2는 2025년 예산안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장래에 발생할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대상자 수는 불임치료 환자 수에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중,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 난임치료휴가 실제 활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
  - 난임치료환자 수는 보건 의료빅데이터의 불임치료환자 수를 토대로 산출

[표 15] 난임치료휴가 관련 통계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난임치료 환자 수(A)           |                   | 230,802 | 228,382 | 252,288 | 243,347 | 243,212 |
|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율(B) |                   | 79.3    | 79.4    | 79.8    | 79.9    | —       |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C)      |                   | 70.9    | 72.6    | 75.2    | 77.0    | 77.0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D)     |                   | 56.6    | 56.2    | 56.4    | 57.6    | 59.5    |
| 난임치료<br>휴가<br>사용률      | 난임치료대상자 비율(E)     | —       | —       | 8.6     | 8.6     | —       |
|                        | 실제 난임치료휴가 활용실적(F) | —       | —       | 4.5     | 4.3     | —       |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1. 보건 의료빅데이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

3. 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3

- 추계기간 동안 난임치료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환자 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산출
-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중과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3년 실적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비율의 평균 증가폭 만큼 매년 증가한다는 가정을 통해 산출
- 출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본 추계서는 성별 차이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난임치료휴가 사용 예상률은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Ⅱ-1)」를 준용하여 산출

[표 16]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난임치료 환자 수(A)                                                                    | 239,606 | 239,606 | 239,606 | 239,606 | 239,606 |
|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율(B)                                                          | 79.9%   | 79.9%   | 79.9%   | 79.9%   | 79.9%   |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C)                                                               | 77.0%   | 77.0%   | 77.0%   | 77.0%   | 77.0%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D)                                                              | 60.8%   | 61.2%   | 61.6%   | 62.1%   | 62.5%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E)                                                          | 39.2%   | 38.8%   | 38.4%   | 37.9%   | 37.5%   |
| 난임치료 휴가사용률(F)                                                                   | 50.0%   | 50.0%   | 50.0%   | 50.0%   | 50.0%   |
| 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br>( $G=A \times B \times C \times D \times F$ , 천명)     | 45      | 45      | 45      | 46      | 46      |
| 비(非)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br>( $G=A \times B \times C \times E \times F$ , 천명) | 29      | 29      | 28      | 28      | 28      |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1.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

3. 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3

- (지급단가) 2024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난임치료휴가의 지급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 15일에 한함
  - 개정안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8호) 제18조의35)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이며,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지급 기간은 최초 15일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표 17]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사업<br>대상자 수    | 우선지원대상기업(A, 천명)               | 45     | 45     | 45     | 46     | 46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B, 천명)           | 29     | 29     | 28     | 28     | 28     |
| 추가<br>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C, 일)                | 30     | 30     | 30     | 30     | 30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D, 일)            | 15     | 15     | 15     | 15     | 15     |
| 1일 지원단가(E, 원)  |                               | 80,382 | 80,382 | 80,382 | 80,382 | 80,382 |
| 추가<br>재정<br>소요 | 우선지원대상기업<br>(F=A×C×E, 억원)     | 1,080  | 1,088  | 1,095  | 1,103  | 1,111  |
|                | 비(非)우선지원대상기업<br>(G=B×D×E, 억원) | 349    | 345    | 341    | 337    | 333    |
|                | 소계(H=F+G, 억원)                 | 1,429  | 1,433  | 1,436  | 1,440  | 1,444  |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429억원, 2030년 1,444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8]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추가재정소요 | 1,429 | 1,433 | 1,436 | 1,440 | 1,444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난임휴가 급여 지급

□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임

- 난임치료휴직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계획안 기준 출산휴가 급여

지급 인원(45,237명) 대비 2025년 계획안 기준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예상인원(623명)과 가중치(0.522)를 적용하여 산출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대비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상당액의 비율을 의미함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따라서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통상적인 출산휴가 급여 대비 지급액(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계산한 가중치가 0.522임

[표 19]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난임 시나리오1(A)                              | 1,079 | 1,109 | 1,141 | 1,173 | 1,206 |
| 난임 시나리오2(B)                              | 1,429 | 1,433 | 1,436 | 1,440 | 1,444 |
| 기간제·파견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시나리오1<br>(C=A×0.72%) | 8     | 8     | 8     | 8     | 9     |
| 기간제·파견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시나리오2<br>(D=B×0.72%) | 10    | 10    | 10    | 10    | 10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본 수치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 급여의 비중은 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안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향후 실제 급여 수급자 등의 비중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등이 상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의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비율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2는 2025년 예산안 산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로, 난임치료 환자 규모 및 고용보험가입률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남 희 | 배아형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남 희 | 02-6788-3737 | nhee@na.go.kr |